화성동탄 A-87BL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Richeville 리슈빌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3길 36(화성동탄2 A-87BL)

■공급대상 : 전용면적 60~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62호

■시 행 사 : (하)제룡하나동탄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 공 사 :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동탄호수공원 리슈빌은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hosu-richeville.co.kr) 로 운영합니다.
- 방문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hosu-richeville.co.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이 주택의 분양홍보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 방문 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첨자의 서류 접수 및 정당계약시 사전예약한 당첨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 방문 시 이용자분들 중 손목지닌 방문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 측정시 37.5도가 넘을 경우 당사자 입장 불가

■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내 상담전화(☎1577-6708),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센터 전화(☎1644-7445) 등을 통해 입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침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차인모집공고 를 해당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이외, 청약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하)제룡하나동탄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입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입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청(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하)제룡하나동탄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입차인 모집공고일은(2021.04.30.(금))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이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입차인모집공고일(2021.04.30.(금))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입차인공급대상자 : "주택임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19세 이상이면서 만2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가 성원
※ "무주택세대구원,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를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주민등록표 등재되어야 함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주민등록표 등재되어야 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를 주민등록표 등재되어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호3조 제4항, 제5조의6 의거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6667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또는 입주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1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 : 계약일, 2분양 권을 전매한 경우 : 전매계약 체결일)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1)실거래 신고서 상 매매대금금 완납일"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원에게 무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일대조합주택으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중 공공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청약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입차인 모집공고일 [2021.04.30.(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자 본인 및 공급신청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30.(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입차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입차인 기간 중에도 확인 할 수 있음), 만약 입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입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경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비고3에 따라 입대차계약 경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이후 1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입대차 경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약 신청 및 입주 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입대차계약 경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 입차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입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경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대차계약 경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 이후 1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입대차 경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의 입차인자격 및 공급 세대수는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604세대)은 총 세대수(762세대)에서 특별공급(153세대 세대포함 제외한 공급물량을 예정)에, 특별공급 접수 마감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만 입주는 향후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정도 계속하여 입대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입대차 기간 종료 후 입차인에게 발생한 화재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홈페이지(http://hosu-richevill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차자 모집 및 전대 금지
- 입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입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입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입차권을 박탈하고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입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임도 및 전대 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입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 체결과 동 계약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나,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입차인 중 1명에 한하여 입차인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입주일 이후 입차인 지위 양도 및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차인은 입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입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입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입대인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합니다. 단, 입차인은 입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위: 세대, 원)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무주택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3의 제4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제2호의3, 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특별공급의 경우 신혼은 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보유 기준일(제1호의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공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이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입대차인자로부터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입사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부모와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가. 부모의 소득 및 주택 소유 여부 : 직계존속
나.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여부 :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 :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 :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소유 주택 수 : 1호 이하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이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 (총칙령"건축법」시행령 제799호 건축법 부칙 제9조 제2항 및 부칙 제8조 제2호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입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 아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6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받은 경우 분양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입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공급일정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2021.05.06.(목) 08:00 ~ 17:30	인터넷 청약접수 당사 홈페이지 "http://hosu-richeville.co.kr"	無	2021.05.13.(목) 당사 홈페이지 "http://hosu-richeville.co.kr"
일반공급	2021.05.07.(금) 08:00 ~ 17:30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검색)	10만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후1만원 금액 확인 필요)	2021.05.13.(목)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직접방지를 위하여 일부 세대는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세대주 기간 내에 해당 청약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 상태 및 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내 청약 접수 및 당첨 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상태 및 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밖의 공공연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내 청약 접수 및 당첨 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상태 및 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접수 일정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직접방지를 위하여 일부 세대는 선착순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또한 그 밖의 공공연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내 청약 접수 및 당첨 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상태 및 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공연한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받은 경우 분양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입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입차인은 제외됩니다.

5. 계약체결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1.05.14.(금) ~ 2021.05.22.(토) 09:30~17:30	당사 '분양홍보관'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1, 2층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24.(월) ~ 2021.05.30.(일) 09:30~17:3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 의거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보호망 이용동의 및 정보보호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실 생긴 후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단확인 가능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해당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기간을 정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거나 소명 기간 내에 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기간을 정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당첨에 따른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기간을 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 주민등록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3.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4.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5.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입차 포함하여 발급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7.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주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유형별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홍보관 비치
		○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기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기관의 발행한 임신진단서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기서(분양홍보관 비치)
청년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있을 경우
	○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서류	본인	· 사유서(분양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입차 포함 "상세"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분양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입차인 모집공고일(2021.04.30.(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임대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되 모든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적격성은 입차인 결정 전까지 청약신청분의 당첨자 중 입차인 당첨자는 입주 시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내 청약 접수 및 당첨 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상태 및 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방문접수 시 기재사항에 본인 이외 인증서 보유))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청약 1일 및 1회 이제한도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5. 계약체결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1.05.14.(금) ~ 2021.05.22.(토) 09:30~17:30	당사 '분양홍보관'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1, 2층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24.(월) ~ 2021.05.30.(일) 09:30~17:3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 의거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보호망 이용동의 및 정보보호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실 생긴 후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단확인 가능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해당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기간을 정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거나 소명 기간 내에 사유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기간을 정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당첨에 따른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기간을 정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 주민등록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 제출시 대리신청 불가
	○		3.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4.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5.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입차 포함하여 발급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7.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주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공급 유형별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홍보관 비치
		○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기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기관의 발행한 임신진단서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기서(분양홍보관 비치)
청년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2.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원 소득이 있을 경우
	○		3.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신혼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신혼부부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서류	본인	· 사유서(분양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세)	예비배우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입차 포함 "상세"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분양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입차인 모집공고일(2021.04.30.(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임대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되 모든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적격성은 입차인 결정 전까지 청약신청분의 당첨자 중 입차인 당첨자는 입주 시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내 청약 접수 및 당첨 시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상태 및 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방문접수 시 기재사항에 본인 이외 인증서 보유))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청약 1일 및 1회 이제한도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1~3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해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입사불가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입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